「2026년 제3차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」 대상자 모집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함)는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를 지원합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 3일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(참고자료 1번)*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

□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'26. 11. 27.(예정)

□ 선정규모 : 0명 (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선정규모 최종 확정)

* 예산,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될 수 있음(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지원)

** 단, 지원기간 내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선정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

□ 지원내용 : 창업 초기비용*을 1,000~2,000만원까지 지원, 전문컨설팅 지원

* 인테리어, 집기구입비, 브랜드 개발, 마케팅 홍보, 홈페이지·APP, 폐업 비용 등

**** 지원사업 선정자는 추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컨설팅을 반드시 참여해야 함**

***** 최종 평가 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예산 및 선정 규모를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배정함**

금액	선정규모	지원항목
2,000만원	0명	• **매장 인테리어·리모델링 비용 집행(필수),** 기타 지원 항목(브랜드 개발, 마케팅 홍보비, 홈페이지·APP, 집기구입비, 폐업비용 등)
1,000만원	0명	• **매장 인테리어·리모델링 비용 집행(선택),** 기타 지원 항목(브랜드 개발, 마케팅 홍보비, 홈페이지·APP, 집기구입비, 폐업비용 등)

□ 지원업종

○ '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(참고자료 2번)'을 제외한 모든 업종

* 단, ① 부동산관리업(6821)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, ②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
- **부동산관리업**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
- **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**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2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**신청기간 : '26. 8. 3.(월) ~ 8. 24.(월) 18:00 센터 도착 분 까지**

* 온라인 접수는 '최종 제출'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로 인정됨

** 단, 신청자가 미달 될 경우 신청기간 연장 될 수 있음

□ **신청방법 :** 내방·등기우편·온라인·이메일 접수

접수처	
주소	(07230)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
온라인 접수	DEBC 창업 NET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(https://start.debc.or.kr/) 1. 사이트 회원가입 → 2. 사업신청 선택 → 3. 창업 사업화 사업 확인 후 '신청하기' 선택
접수메일	changup@debc.or.kr *** 26년도_창업사업화지원사업_000(신청자 이름)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** **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 요망 *** 구글 드라이브·네이버 MYBOX 등 클라우드 링크 제출 불가, 파일 직접 첨부
전화	02-2181-6534, 02-2181-6524

*** 접수 후 센터측에 유선전화를 통한 서류접수 여부 최종 확인 필수**

**** 중복 접수 시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,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서류를 최종 제출본으로 접수**

□ **신청자격 : '26. 1. 1.(목)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*,** 또는 직전년도 특화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

* 창업교육과정: 온라인 창업교육(기초, 역량강화, 재기, 협동조합, 시각장애인 창업교육, AI활용 창업교육)

** **업종전환희망자는 온라인 "재기교육" 필수 수강**

※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

절 차	방법
온라인 교육 신청	① https://start.debc.or.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·역량강화·재기·협동조합·시각장애인·AI활용 창업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**(업종전환희망자는 재기교육 필수 수강)** ④ 성명·연락처·성별·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
▼	
온라인 교육 수강	온라인교육은 기초·역량강화·재기·협동조합·시각장애인·AI활용 창업교육 6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*** 교육 당 8강~24강 까지 제공/ 강의 진도율 100% 완료**
▼	
수료증 발급	http://start.debc.or.kr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설문조사 완료 후 수료증 출력 가능

□ 서류심사 제출서류 (장애유형, 정도, 주민번호 전체 공개 필수)

구분	제출서류	제출요령
공통 (필수)	■ <첨부파일 1> 지원신청서, 자기소개서, 사업계획서	① 센터 공식 홈페이지 (https://www.debc.or.kr)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파일 다운로드 ② 창업넷 (https://start.debc.or.kr/) 회원가입 → 사업신청 → 창업 사업화사업 신청하기
	■ <첨부파일 2>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, 중소기업 관리시스템 정보 동의서 각 1부 (총 3부 모두 필수 제출, **서명필수)**	
	■ 장애인증명서 *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- **장애유형, 정도 공개 필수**	① 온라인 발급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
	■ 온라인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**(업종전환희망자 재기교육 필수 수강)**	- 공고 2페이지(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) 참고 - **사업 접수 마감일까지 수강 완료된 수료증만 인정**
예비 창업 (필수)	■ 생애 첫 창업(창업경험 없는 경우) - 사실증명 1부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	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- **주민번호 전체 공개 필수**
	■ 예비창업(창업경험 있는 경우) - 사실증명 2부 (사업자등록사실여부, 총사업자 등록내역 각 1부)	
해당자 (선택)	■ 당해연도 전국 장애·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료	개별 사본 제출
	■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, 특화교육 수료증	수상증빙자료 및 특화교육 수료증(발달장애 특화교육포함)
	■ 센터 주관 기업가 역량강화 센터 교육 수료증	교육 수료증 제출
	■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(지재권 등)	개별 사본 제출
	■ 저소득 증빙서류 (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)	① 온라인 발급 (수급자)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(차상위)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

□ 면접심사 합격자 최종 제출서류 (면접심사 합격자 대상, 9/17(목)까지 제출)

구분	제출서류	제출요령
공통 (필수)	■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**(주민번호 전체공개 필수)**	①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관할 세무서 방문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(https://www.gov.kr),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업종 전환 (필수)	■ 사실증명 (총사업자등록내역) 1부	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(주민번호 전체공개 필수)
	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
	■ 업종전환 확약서 1부	통계청 상담센터(☎ 02-2012-9114)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코드(5자리)를 확인하고, 기존 및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

□ 지원제외대상

○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[참고자료 2번]

○ 비영리사업자(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)

*「상법」에 의한 회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센터 등)

○ 센터에서 사업화지원 및 점포지원을 받았던 자(중도포기 포함*) 또는 받고 있는 자

* 중도포기자란 사업화지원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고 협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및 점포지원을 받고 점포계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

○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

* 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, 예비창업자는 입주한 상태에서 지원가능

3 사업화 자금집행

○ **〔사업화 자금〕** 창업사업화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

정부지원금	선정자 현금부담금	
	2천만원	1천만원
2천만원/1천만원	640만원	320만원

※ 총 사업비 및 현금 부담 산출(예시)

■ 센터지원금이 2,000만원인 경우 **(선정자 현금부담금 포함 총 2,640만원 사용)**

- 선정자 현금부담금(640만원) : 400만원(=2,000만원*20%)+부가세(240만원)

< 주요 집행비목 >

지원항목	지원내용
매장 인테리어·리모델링(필수)	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·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**(2천만원 트랙 선정자는 리모델링 선택 필수), 1천만원 트랙 선정자의 경우 선택사항**
집기구입비	사업장 내 집기,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(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포함)
마케팅 홍보	판로개척·고객확보를 위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·홍보에 소요되는 비용
브랜드 개발	CI·BI 디자인,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
홈페이지·어플리케이션	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(서비스)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
폐업지원비용	폐업 후 사업정리(점포철거 등),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 * 한도 300만원

< 지원제외 항목 >

사업비 지원제외 세부내용
○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
○ 인건비(아르바이트, 파견직원 고용 등) 단,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(sw개발, 앱개발 등) 인건비(견적서 발급 시 인건비 항목 필수 기입)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
○ 단순 소모성 경비(문구류 구입, 종량제 봉투 구입 등), 식비, 다과비, 개업식 비용(떡, 주류 등)
○ 임차 보증금, 월세 및 관리비, 공과금(수도세, 전기세, 부가가치세 등)
○ 각종 수수료(부동산 중개 수수료, 지재권 취득 수수료, 정수기, 경비업체, 인터넷, TV수신 등)
○ 교육비(수강비, 교재비 등), 등기가 필요한 동산(푸드트럭, 배달 오토바이, 지게차 등)
○ 여비교통비(유류비, 통행료, 대중교통 운임, 항공운임, KTX운임, 숙박비 등)
○ 재료비(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양산품 및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)
○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,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(목적 외 사용) 비용

4 대상자 선정방법

□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

※ 평가위원회 : 장애인 분야 전문가,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

○ 평가방법(서류심사, 면접심사)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 - (최고점수 + 최저점수)}}{\text{평가위원수 - 2}}$$

○ 서류심사

-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(지원규모)의 2배수 이내 선발

【 대상자 선정 · 평가 가점부여 항목】

※ 각 항목별 2점

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'장애인의 장애 정도' 기준)
2. 저소득장애인(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)
3. 청년창업예정자(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)
4. 여성장애인
5. '센터'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(단, 직전년도(2025년) 이후 수료자만 가능)
6. 당해연도 전국 장애·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
7. '센터'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
8. '센터' 주관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교육 수료자

○ 면접심사

-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

○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

$$\text{최종점수} = \text{서류심사} * 0.3(30\%) + \text{심층면접심사} * 0.7(70\%)$$

- 1차 서류심사(30%) + 2차 면접심사(70%)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○ 예비후보자 선발

-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 단, 최초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센터가 요청한 기간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*에게 자격 부여

*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최초 선정자의 지원 포기 또는 협약 체결 후 협약 기간 내 중도 포기 발생 시에 한하여 추가 선정될 수 있음

** 포기자 발생에 따른 예비후보자 추가 선정 시, 추가 선정자는 1,000만원 지원 대상으로 한정함

□ 심사항목 및 배점 (서류평가)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항목</th><th>세부 평가요소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청자 환경</td><td>창업의 필요성</td><td>정성</td><td>- 신청자 환경 및 창업자 마인드</td><td>15</td></tr>
<tr><td>신청자 신용상태</td><td>정량</td><td>- 개인신용보고서의 신용등급
※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이 없어 미확인일 경우 3~6등급(3점)으로 산정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891~1000</th><th>630~890</th><th>454~629</th><th>0~453</th><th>신용회복 지원중, 개인회생, 파산면책</th></tr>
<tr><td>배점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0</td></tr>
</table></td><td>5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사업 계획성</td><td>아이템 선정배경</td><td rowspan="5">정성</td><td>- 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아이템 조사· 분석</td><td>- 사업운영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타당성</td><td>15</td></tr>
<tr><td>아이템 운영방안</td><td>- 아이템 운영계획 및 실현 가능성,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</td><td>10</td></tr>
<tr><td>아이템 수익계획</td><td>-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
※ 단, 기술평가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아이템 운영방안으로 평가</td><td>15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자금계획</td><td>소요계획</td><td>-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</td><td>15</td></tr>
<tr><td>조달방안</td><td>- 자부담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</td><td>15</td></tr>
<tr><td>가점</td><td></td><td>가점</td><td>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저소득장애인 해당자
- 청년창업예정자(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)
- 여성지원자
- '센터' 주관 특화교육 수료여부(단, 직전년도(2025년) 수료자만 가능)
- 당해연도 전국 장애·비장애 경진대회 수상자
- '센터'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당 아이템으로의 지원여부
- '센터' 주관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교육 수료자
* 단, 가점의 경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가능</td><td>각 2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총합</td><td>110</td></tr>
</table>

□ 심사항목 및 배점(면접평가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항목</th><th>세부 평가요소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>신청자 역량</td><td rowspan="5">정성</td><td>-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, 경험 등 창업 가능성</td><td>30</td></tr>
<tr><td>아이템가능성</td><td>-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, 시장 가능성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시장조사· 운영방안</td><td>-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운영방안,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</td><td>20</td></tr>
<tr><td>소요자금 조달계획</td><td>-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</td><td>15</td></tr>
<tr><td>사업 위험분석</td><td>- 사업·아이템의 수익 수준,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적정성</td><td>15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총합</td><td>100</td></tr>
</table>

○ 정성평가 배점 기준

배점 \ 단계	매우양호	양호	보통	미흡	매우미흡
30점	30	25	20	15	10
20점	20	16	12	8	4
15점	15	12	9	6	3
10점	10	8	6	4	2

5 사업화 추진절차

단 계	일 정	내 용
신청·접수	8.3.(월)~24.(월)	▪ 내방 및 등기우편, 온라인 접수
기초서류심사	9.2.(수)~4.(금)	▪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▪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▪ 종합점수의 30% 반영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	9.8.(화)	▪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▪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
심층면접심사	9.14.(월)	▪ 종합점수의 70% 반영 ▪ 면접심사
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및 최종 서류 제출	~9.17.(목)	▪ 면접심사 합격자 대상 최종서류 접수 *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검토 결과 부적정한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최종 합격자 발표	9.18.(금)	▪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
협약체결 및 e나라도움 가입	9.30.(수)	▪ 협약체결 및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의무교육 참가 ▪ 선정자 e나라도움 가입
지원금지급/사업화수행	9.30.(수)~11.27.(금)	▪ 지원금 신청·접수 및 지급 ▪ 사업화 수행
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	9.30.(수)~11.27.(금)	▪ (선정자)사업화지원 완료보고서 제출 ▪ 사업화지원 내역 검토 ▪ 사후관리 멘토링 등
현장점검 및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	9.30.(수)~11.27.(금)	▪ 사업화지원 내역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▪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반납 등
창업사업화 지원 완료	11.27.(금)	▪ 지원 완료

※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(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)

※ 선정자는 협약체결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

6 기타 유의사항

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(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)

□ 면접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

□ 선정대상자는 센터가 요청한 기한 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·소멸

□ 센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, 점포보증금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 불가

□ 금회(2026년 제3차) 모집공고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*이며, 사업비 집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약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.

* 선정자의 포기 등으로 예비순위자가 추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일정에 따라 협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.

□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, 개업연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

*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,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

□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고,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함

*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,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

** 단,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(가입관련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/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: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□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계약(집기구매, 인테리어 등)은 반드시 센터와의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이후 센터의 집행 승인을 거쳐 진행해야 함 (센터 사전검토 없이 대상자 임의로 체결한 보조금 지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(지급)이 불가)

□ 센터는 사업화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행물 게재, 홍보,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 지원내용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발표 및 활용할 수 있음

□ 선정 대상자는 향후 센터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성과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

□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받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7 선정자 의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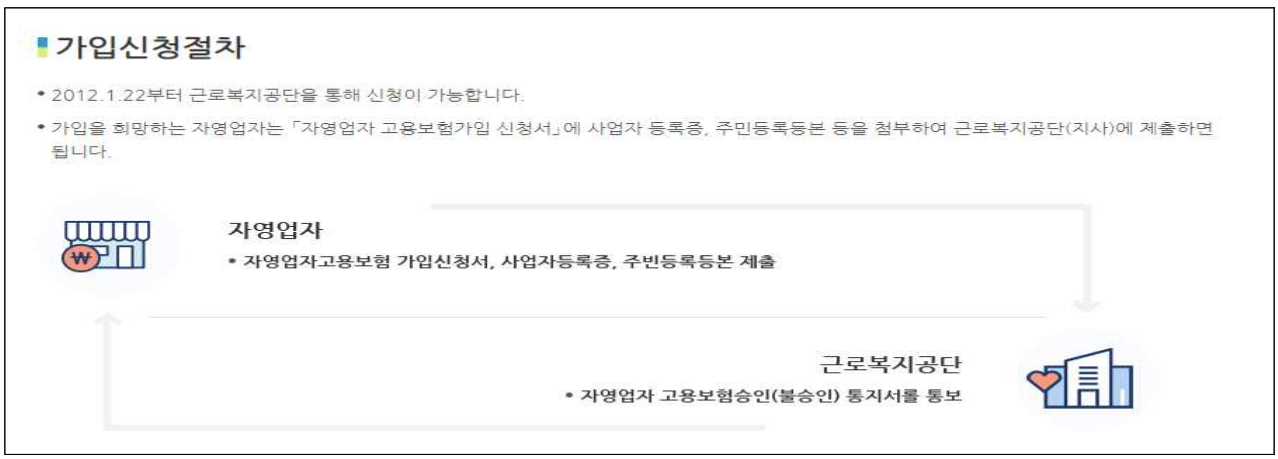
□ **(협약 체결)**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

□ **(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)** 선정자는 사업의 지속적 영업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,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

□ **(통장개설 및 OTP 발급)** 선정자는 협약서 작성 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 활용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과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,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

□ **(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의무)**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협약기간 내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을 의무가입 해야하며, 12개월 이내 해지한 경우 사업화 지원 전액을 반납 하여야 함(부득이한 사유* 제외)

* 천재지변, 재해, 투병,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,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



□ **(사업체 유지 의무)** 선정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**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**하여야 하며, 12개월 이내 휴·폐업한 경우 사업화지원 전액을 반납 하여야 함(부득이한 사유* 제외)

* 천재지변, 재해, 투병,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,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

○ 선정자는 협약상의 일체 권리, 의무,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·증여·대물변제·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

□ **(자료제출 및 현장점검)**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

- ㅇ 센터는 확인점검, 성공사례 확보 등을 위하여 5년간 매출·고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**(제재 및 환수)** 센터는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자에 대한 제재 및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음

- ㅇ 선정자가 제출된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
- ㅇ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,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ㅇ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창업으로 속인 경우
- ㅇ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, 센터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자금 전액을 환수하고 통지일로부터 동 사업 재참여를 제한
- ㅇ 선정자가 사업화자금을 수령 후 사업체 유지 의무기간 내에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(부득이한 사유 제외) 센터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
- ㅇ 센터에서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제재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
- ㅇ 선정자가 협약 기간 이내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대해 센터 지원금과 자부담 요율을 적용하고, 센터 지원금의 차액을 환수
- ㅇ 창업 유지의무 1년 및 고용보험가입 유지의무 1년 위반 시 사업비 전액환수

참고1 장애인 · 예비창업자 · 업종전환희망자 기준

○ **(장애인)*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**(예비창업자)**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 신규 사업자등록(비영리 포함)을 하지 않은 자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확인) 또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전일(2026년 8월 2일)까지 사업자를 모두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(단,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)

○ **(업종전환희망자)** 기존 사업을 모두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*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(업종전환의 시점은 모집마감일 익일 이후 기간 내에(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)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,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)

*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폐업·양도 대상에 포함

**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(4단위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. 단,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(5단위)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.

***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붙임파일 참고.

1) https://kssc.mods.go.kr:8443/ 접속 -> 경제분류 -> 한국표준산업분류 -> 분류검색

2) 통계청 상담센터(☎ 02-2012-9114)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코드(5자리)를 확인하고, 기존 및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

<업종전환 예시>

분류	전환 전 업종		전환 후 업종		업종전환 인정여부
	업태	종목	업태	종목	
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	교육 서비스업 (85)	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(85709)	정보통신업 (58~63)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(59111)	업종전환 인정 ※소분류(857→591) 변경
	숙박 및 음식점업 (55~56)	한식 일반 음식점 (56111)	숙박 및 음식점업 (55~56)	커피전문점 (56221)	업종전환 인정 ※소분류(561→562) 변경
	정보통신업 (58~63)	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(58122)	정보통신업 (58~63)	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(58111)	업종전환 불인정 ※소분류(581) 동일
제조업	제조업 (10~34)	빵류 제조업 (10602)	제조업 (10~34)	도시락류 제조업 (10701)	업종전환 인정 ※세분류(1060→1070) 변경
	제조업 (10~34)	식초,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(10831)	제조업 (10~34)	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(10832)	업종전환 불인정 ※세분류(1083) 동일

참고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제 2조 제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
표준산업분류	업 종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"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"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"관광진흥법"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"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및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.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 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-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*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-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